

# 창업 휴학 운영 지침

2019. 2. 1. 제정  
2020. 9. 1. 일부개정  
2022. 3. 1. 일부개정  
<크림슨창업지원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사운영규정」 제24조(휴학의 분류),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장(휴학과 복학)에 따라 창업으로 인한 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휴학 개관) ①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허용하여 원활한 창업활동 및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휴학을 일컫는다.

제3조(창업 휴학 기간) 창업 휴학은 기본 2년(4학기), 최대 3년(6학기)까지 가능하며, 최대 허용기간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2. 창업 휴학 2년(4학기)을 신청하고 소진한 자
  3. 제2호에 따라 창업 휴학을 2년 이상(2+1) 신청하고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제2호에 따른 창업활동 기간의 성과에 대해 창업 휴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 휴학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은 자
- <신설 2022. 3. 1>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 창업 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개정 2022. 3. 1>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제5조(창업 휴학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창업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1. 일반유희주점업
2. 무도유희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6조(창업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창업 휴학은 일반휴학과 동일한 기간 내에 매 학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2. 3. 1>

② 연속하여 휴학하는 경우 매 학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창업 휴학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 신청서
2.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별첨 1]
3.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4. 사업계획서 [별첨 2]
5.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 3-1 참고, 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 3-2 참고, 자유양식 가능] (창업유관부서 : 크림슨창업지원단, KU개척마을,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주회사(주), 스타트업 연구원,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 등) <개정 2022. 3. 1>
6.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개정 2022. 3. 1>
7.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 포트폴리오, 매출/고용/마케팅 관련 자료, 수상내역 등) <개정 2022. 3. 1>

제8조(창업 휴학 심의) ① 크림슨창업지원단에서는 휴학의 목적이 실제 창업기업 운영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창업 휴학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1. 제출서류 서류심사
  2. 창업기업 현장조사
  3. 창업 휴학 심의위원회 심의
- ② 서류심사에서 현저한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소속 대학에 통보한다.
- ③ 서류심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창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현장조사 결과 신청서류와 다른 허위사실 및 현저한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결과를 소속 대학에 통보한다. <개정 2022. 3. 1>
- ⑤ 창업 휴학 최대 허용기간(3년)을 신청한 때에는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속 대학에 통보한다. <신설 2022. 3. 1>
- ⑥ 심의위원회는 창업 휴학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며 그 결과를 소속 대학에 통보한다. <개정 2022. 3. 1>

제9조(창업 휴학 심의위원회) ① 창업 휴학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 휴학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창업 유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2.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창업 휴학 연장) ① 창업 휴학의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별첨 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계획서 [별첨 2]
4. 사업실적보고서 [별첨 4]

② 창업 휴학의 연장 심의는 제8조(창업 휴학 심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제11조(창업 휴학 학생의 의무) ① 창업 휴학 참여 학생은 대학의 창업성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크림슨창업지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매출액 관련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필수) 등)
2. 창업기업 고용정보(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3. 창업기업 사업장 정보
4. 기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개정)